

2023년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행 안내

SEUM TAX

1

해외금융계좌신고란?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국내자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파악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내역을 ‘국세조세조정법(이하, ‘국조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해당년도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통해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미신고 금액에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조건 계좌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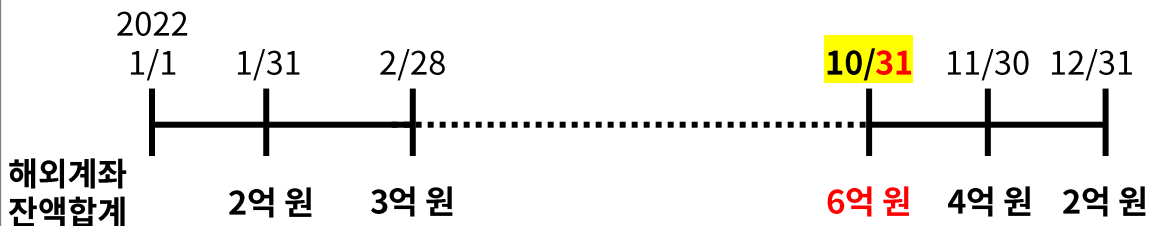
2

신고대상자

2022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국조법 제53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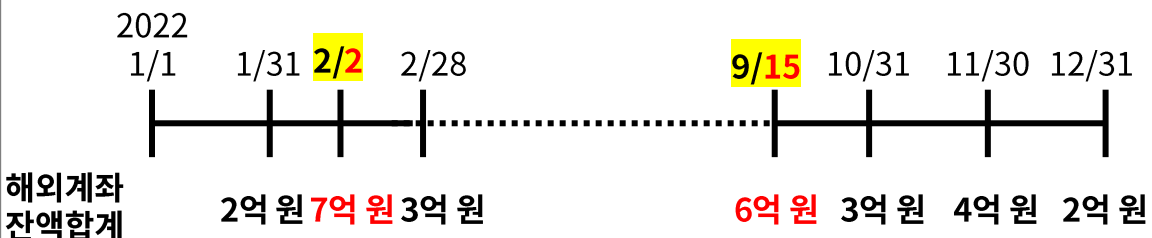
2022년부터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가상자산 해외계좌(지갑)도 포함되어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가상자산 해외계좌(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잔액의 합계가 해외예금과 채권 등의 잔액과 합산하여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CASE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계좌 잔액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신고대상

신고대상이 아닌 CASE



2022년 중 해외계좌 잔액합계가 5억 원 초과한 적이 있어도 매달 말일에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 불성실 등에 따른 제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 과소신고한 금액	과태료
가. 미신고 ·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2)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금액 × 10퍼센트 신고한 금액 - 신고해야할 금액) × 10퍼센트
나. 미신고 ·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2) 과소신고한 경우	2억원 + (미신고금액 - 20억원) × 15퍼센트 2억원 + (신고한 금액 - 신고해야할 금액 - 20억원) × 15퍼센트
다. 미신고 ·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 초과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2) 과소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미신고금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작은 금액 [6억5천만원 + (신고한 금액 - 신고해야할 금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작은 금액

4

신고대상 가상자산 계좌 (지갑)

국조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 가상자산 계좌는

1)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게 2)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보관 등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국조법 제52조 제1호 및 제2호).

즉,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설한 지갑 등을 말하며 메타마스크와 같은 해외 지갑관리 사업자 및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지갑 등은 법령해석 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식별가능한 고유번호(계좌, 지갑)이 있는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해외가상자산거래소 외 해외지갑관리 사업자 및 플랫폼에서 관리되는 지갑도 신고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하드웨어(USB)형태로 관리되는 개인지갑도 그 관리회사가 국외에 소재한 회사라면 신고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 가상자산 계좌는

- 1) 해외가상자산거래소 지갑
- 2) 메타마스크 등 해외지갑관리 사업자/플랫폼에서 관리되는 지갑
- 3) 해외사업자가 관리하는 하드웨어 개인지갑이 해당될 것이며

다른 일반해외금융계좌(해외주식, 채권, 예금, 보험계좌)와 합산하여 2022년 매월 말일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5

신고대상 가상자산 계좌 (지갑)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2022년 중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2022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합계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아래와 표와 같이 계산하여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 계좌	2022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토큰수량 x 해당 거래소 증가 x 기준환율
지갑플랫폼 지갑	2022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토큰수량 x 코인마켓캡 시가 x 기준환율
하드웨어 지갑	2022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토큰수량 x 코인마켓캡 시가 x 기준환율

* 개인지갑의 경우, 국조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가장 합리적인 코인마켓캡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때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해외금융계좌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해외주식계좌는 제외합니다)

6

제출 서류

세움택스에게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리를 맡기시는 분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신고를 해드릴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분증 사본 (내국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2022년 매월말일자 가상자산 잔액 증명 (스크린 샷, PDF 등)

- ex) Binance : Account Statement → 2022년 매월 말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등) 날 짜 조정 → export
- 개인지갑의 경우, 매월 말 잔액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이더스캔등을 통해서 Transaction History를 역추적하여 매월 말일에 잔액을 알아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많으신 경우, 이더스캔 Transaction history를 csv 파일로 전달해주세요.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인 경우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 차명계좌인 경우 : 명의자와 실질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2022년 보유한 가상자산 해외지갑주소

- 플랫폼 이름과 해당지갑의 주소가 보이는 스크린 샷 등의 증명
- 중앙화 해외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의 지갑은 위의 매월말일자 가상자산 잔액 증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중앙화 해외거래소 회원가입일, 개인지갑 지갑생성일

▶ 일반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해외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말하며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해외주식은 제외)

- 해당계좌의 2022년 매월 말일 잔액 증명 서류
- 해당계좌의 계좌번호, 계좌종류, 계좌개설일 및 해지일

* 개인별로 검토 중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7

신고 수수료

신고 대행 수수료	
개인	기본보수 30만원 (가상자산 계좌 4개까지) + 가상자산 계좌 1개당 5만원추가 + 일반계좌 1개당 3만원 추가
법인	기본보수 50만원 (가상자산 계좌 5개까지) + 가상자산 계좌 1개당 5만원 추가 + 일반계좌 1개당 3만원 추가
신고대상판단 및 상담	
<p>* 별도협의 (신고 대상자인지 잘 판단되지 않거나, 자료확보가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p>	

8

Contact Info

세움택스
www.seumtax.com

세움택스 문의 번호 T. 02-562-3115
김지호 세무사 jeeho.kim@seumlaw.com